

2020. 11. 11(수).

# 2020 노동자 손해배상-가압류 대정부 요구안

## ○ 발신

손배가압류 피해 노동현장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목차

1. 손배가압류 현황 집계 배경	-- p.3
2. 대정부 요구안 성명문	-- p.4
3. 2020 노동자 손배가압류 현황	-- p.6
1. 2020년 현재 손해배상 가압류 집계 기준	-p.6
2. 2020년 현재 손해배상 가압류 집계 현황	-p.7
3. 별도집계 건 :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해소된 사건	-p.27
4. 쟁점정리	-p.31
4. 손배가압류 노동자들의 피해 기록	-- p.34

## 2020 손배가압류 현황 집계 배경

- 본 현황발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공식적인 현황집계입니다.
- 이전 집계발표한 2017년 6월 28일, 손잡고, 민주노총, 한국노총은 공동으로 현황발표 후 문재인정부 국민인수위를 통해 손배남용에 대한 법제도개선과 TF마련 등을 담은 대정부 요구안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 정부는 이후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를 비롯 각 유관기관에 적폐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하였고, 각 2-3년 간 조사활동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조무력화시도, 불법파견에 대한 방기, 노동자 국가폭력에 대한 이명박정부의 개입 및 지시, 국정원의 민주노총과 소속 노조 사찰이 의심되는 문건이 발견되는 등 '노동적폐'와 관련 진상규명 등이 이뤄졌지만(예-고용노동행정개혁위 활동보고서 발간,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 조사결과 발표 등) 적폐행위가 벌어지는 과정에서 수단으로 남용된 손배소송에 대해서는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 더욱이 2017년 하반기 이후 ILO, 유엔사회권위원회 등 국제기구에서 쟁의행위에 대한 한국의 '손배가압류' 제도 남용을 두고 재차 시정권고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다가오는 2022년까지 국제기구에도 답변을 주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 지난 약 3년여동안, 노동현장에서는 손배가 확정되어 압류가 집행되거나, 새롭게 손배가 청구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 이에 다시금 현황집계를 통해 지난 동안 손배가압류와 관련해 노동현장과 노동자들의 권리행사에 어떤 사례가 발생했는지 정리하고, 문제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 11/11 오후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과 함께 대정부 요구안을 청와대에 전달한 이후, 오후2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2020, 손배가압류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현장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해당 증언영상의 편집본은 추후 링크주소와 함께 별도로 청와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2020 노동자 손배, 22개 사업장과 국가손배, 58건, 청구금액 658억원]

## 노동권을 보장해야 “노동자들이 행복한 세상”이 가능하다 정부는 노동3권 무력화시키는 손배가압류 철폐하라!

“손해배상과 가압류의 남용은 노동3권을 무력화시키는 부당한 처사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국민의 힘으로 바꾸어 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람이 먼저인 세상, 그래서 노동자들이 행복한 세상, 우리 손으로 만들어 나갑시다.”

선언의 주인공인 문재인 대통령은 여전히 ‘노동자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길 위에 서 있는지 묻고 싶다.

2017년 6월, 우리는 노동자 손배가압류 현황발표와 함께 대정부요구안을 문재인 정부에 전달했다. 주요 요구는 다음과 같다. 첫째, 누적된 노동자 손배사건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국민기본권 침해’와 ‘노동탄압’을 목적으로 손배가압류가 악용되었는지 살펴볼 것, 둘째, 악용 사례에 대해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요구안 어디에도 이행하지 못할 무리한 내용은 없다. 이를 증명하듯, ILO, 유엔사회권위원회 등 국제기구에서도 쟁의행위를 가로막는 손배가압류제도에 대한 실태조사와 개선 등 권고가 이어졌다. 우리의 요구는 촛불 정부를 자처한 문재인 정부에서 마땅히 임기내 이행해야 할 과제 중 하나이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촛불을 든’ 국민의 대다수가 노동자이기 때문이다.

2020년 오늘 우리는, 새로 집계한 ‘노동자 손배가압류’를 지표로 문재인 정부의 노동권 현주소를 알고, 다시금 대정부 요구안을 전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2020년 노동자 손배현황 집계결과, 현재 존재하는 노동자 손배가압류는 22개 사업장과 국가가 제기했으며, 58건, 청구금액 658억여원에 달한다(상세내역 아래 확인).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새롭게 청구된 손배소송은 28건이다. 청구대상은 정규직-비정규직을 가리지 않음은 물론, 특수고용노동자, 노조없는 노동자가 포함되는 등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에게까지 확대됐다. 사업장 내 ‘근로기준법 준수’와 ‘안전’을 요구하며 신규노조를 설립한 노동조합과 조합원에 대한 손배도 있다.

문재인 정부동안 해소된 사건도 22건 존재한다. 금액으로 따지면, 1,100억여원에 달하는 규모다. 그러나 정부의 ‘역할’로 돌리기는 무리다. 해소 과정을 건건이 들여다보면, 노조와 조합원의 희생이 수반되었기 때문이다. 3년동안 조합원들의 임금압류가 집행되어 종결되었거나, 수십억원의 소송과 장기해고의 상황에서 노동조합이 사라졌거나, 노조탄압 속에서도 투쟁을 통해 다수노조를 지켜 낸 노조가 교섭력을 통해 합의안을 도출한 경우가 다수이다.

정부차원에서 ‘개혁’을 이끌어내기 위한 시도도 있었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경찰청 인권침해진상 규명위원회, 국정원개혁위원회,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등 정부는 각 행정기관마다 ‘위원회’를 설치하고, 2

년여 조사활동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에게도 의미있는 진상조사가 결과가 나왔다. 쌍용자동차 파업에 대한 국가폭력, 불법파견·노조 무력화시도 등 사측의 반노동행위에 대한 정부의 개입 및 책임 방기, 국정원의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에 대한 대대적인 사찰 등 이명박, 박근혜 정부 동안 정부차원의 노동탄압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정황이 드러났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노동자들의 현실에 궁극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

변화를 담보하지 않는 진상규명은 희망고문일 뿐이다. 국가폭력, 불법파견, 노조무력화시도와 같은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노동권을 침해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여전히 국가폭력, 불법파견, 노조무력화시도는 계속되고 있다. 피해자로 규명된 노동자들에게 제기된 손해소송 또한 철회되지 않았다. 최근 김창룡 신임 경찰청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쌍용차 국가손배 소취하 권고에 대해 ‘법의 판단을 받겠다’고 답했다. 사실상 권고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공기업인 도로공사는 ‘불법파견’ 대법원 판결에도 직접고용 대책을 미루다, 항의하는 노동자들에게 되려 손배소를 청구했다. 이처럼 공공기관마저 문재인 정부의 ‘개혁’ 지침을 무시함에도, 정부는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최근 정부가 제시한 노조법 개정안마저 노동권을 퇴행시키고 있다. 국제사회에 답해야 할 권고안 중 하나인 ‘파업권 보장’과 ‘손배배가압류 등 쟁의참가 노동자에 대한 민형사처벌 제한’에 대한 내용은 아예 빠졌다. 반면 직장점거 금지, 사업장 내 쟁의행위 제한, 비종사자 조합원 차별, 소수노조의 교섭권을 무력화시키는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등 노동권 침해 조항들을 대거 포함시켰다. 해당 조항들로 인해 노동조합활동이 민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여지만 더욱 확대된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에게 호소한 “노동자들이 행복한 세상”은 노동권이 보장되어야만 가능하다. 정부가 각 기관 개혁위원회를 통해 확인한 바와 같이 쟁의행위가 발생하는 이면에는 사측과 정부의 불법과 노동권 침해가 자리해왔다. 이는 달리 말하면 노동권을 온전히 보장하고, 정부가 제 역할을 다 할 때, 평화롭고 안전한 노사관계가 조성될 수 있다는 의미다. 노동자 손배가압류는 사측과 정부의 책임을 배제한 채 노동자의 노동조합활동만을 책임 대상으로 놓은 결과다. 손배가압류 남용에 대한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마련 없이는 부당한 손배가압류는 계속 남용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 다시 요구한다.

우리는 현재 누적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대해 정부차원의 실태조사와 해결을 요구한다.

우리는 향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기본권 침해와 노동탄압을 목적으로 악용되는 사용자들의 손해배상 및 가압류를 막기 위해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

우리는 국가가 당사자가 되어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에게 청구한 손해배상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한다.

우리는 손배가압류로 피해를 당한 노동자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2020년 11월 11일

손잡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손해배상가압류 대응 노동현장 일동

## 2020 손배가압류 현황 집계

### 1. 2020년 현재 손해배상 가압류 집계 기준

※ 본 자료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 소속된 노동현장을 중심으로 조사하였습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현재 노동현장 손배사례 관련 집계된 내용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노동현장 가운데 제보되지 않았거나, 양대노총에 소속되지 않은 사례에 대해 누락되었을 수 있습니다. 손잡고는 제보를 통해 노동자 권리 행사 또는 노동조합활동 이유로 손배가압류를 경험한 노동현장 사례를 집계하고 있습니다. 본 현황은 추후 제보가 있을 경우 계속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제보연락 손잡고 02-725-4777/ [sonjabgo47@gmail.com](mailto:sonjabgo47@gmail.com)).

#### 1) 집계 범위 내(2020년 현재 기준 취하, 선고, 변제, 미집행금액 존재 시 집계 포함)

- ① 취하 : 올해 취하한 부분은 집계 포함
- ② 선고 : 올해 선고한 부분 집계 포함
- ③ 미집행 : 판결 확정 후 집행되고 있지 않을 경우 손배로 인한 피해가 유효하다고 보고 집계에 포함집계 범위 내 : 사업장 수 집계 외 손배소 건수 별도 집계

#### 2) 별도 집계(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해소된 손배 건)

- 2017.6.28 발표시 존재했거나 이후 제기된 사건 가운데, 2019.12.31 이전 취하, 선고 후 변제, 가압류 해제된 사건들에 대해 별도 집계
- 미집계 기간 해소된 사건과 관련해 과정이 기록에서 누락되지 않게 하기 위함

#### 3)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제기된 손배 구분

- 위 1)과 2)에서 소제기일을 기준으로 2017.6. 이후 제기된 손배사건 및 특징 정리

### 2. 2020년 현재 손해배상 가압류 집계 현황

- 총 23개 사업장(국가 포함), 손해배상청구소송 58건
- 손해배상청구금액(누적치) 총 65,812,233,009원
- 가압류 금액 총 1,817,000,000원

[표-1] 연도별 사업장 손해배상 청구액(2020년 추가)

(\* 민주노총 2016 정책자료집 참조)

연도	손배청구총액	손배청구 사업장 수
2002. 6.	345억 원	39개
2003. 1.	402억 원	50개
2003.10.	575억 원	51개
2011. 5.	1,582억7천만 원	12개
2013. 1.	1,307억 원	16개
2014. 3.	1,691억6천만 원	17개
2015. 3.	1,691억 원	17개
2016. 8.	1,521억9,295만 원	20개(57건)
2017. 6.	1,867억6,415만 원	24개(65건)
2020.11.	658억1,223만3천9원	23개(58건)(국가포함)

[표-2] 조직별 손해배상가압류 현황(2020)

(\* 민주노총-손잡고 집계)

조직별			청구금액		비고
구분	건수	사업장	손배청구액	가압류액	
금속	48	15	63,872,107,361	1,000,000,000	1건 국가손배
서비스연맹	2	1	285,596,319	-	
사무금융	1	1	20,000,000	-	
민주연합노조	1	1	136,675,000	-	
총연맹	2	1	408,854,329	-	2건 국가손배
지역본부	3	2	839,000,000	817,000,000	
무노조	1	2	250,000,000	-	
계	58	23	65,812,233,009	1,817,000,000	

[표-3] 사업장별 손해배상가압류 상세현황(2020년)

(\* 2020.11월 현재 기준 / 민주노총-손잡고 집계)

조직별		손배가압류금액				최초 소제기일	비고	
노동현장	건수	청구금액	가압류	선고금액 (고등심기준)	지연이자			
계	58	65,812,233,009	1,817,000,000	28,085,535,082	36,940,810,692			
쌍용차 지부	국가	2009가합3922 2014나1494 2016다26679	2,054,449,780	-			2009.10.07	-. 청구사유 : 2009년 정리해고 파업 당시 공권력 투입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인적 피해를 주장하며 청구. -. 2심에서 병합(2014나1487) : 병합 후 개인121명은 항소 취하, 마지막 남은 항소인은 대한민국 -. 대법원 계류 중 -. 2018.8.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 국가폭력 인정 '소취하' 권고. 아직까지 권고 이행이 되지 않음
		2009가합4314 2014나1500 2016다26686	208,000,000				2009.10.29	
		2009가합3151 2014나1487 2016다26662	548,992,702		1,128,394,066	1,397,234,649	2009.08.07	
	회사	2010가합5252 2014나1517 2019다38543	10,000,000,000		3,311,400,000	5,080,593,345	2010.12.17	



현대중공업지부	1	2019가합14529	3,000,000,000	-			2019.07.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구사유 : 2019년 법인분할 반대 파업에 대한 손해청구</li> <li>- 1심 진행 중</li> <li>- 법인분할 반대 쟁의행위 과정에서 주주총회를 열리지 못하게 방해했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 90억원이 넘는 손해를 주장하고 있으나 30억원을 우선 청구함</li> </ul>
한국지엠지부	1	2019가합50594	300,000,000	-			2019.01.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구사유 : 2018년 법인분할 반대 파업에 대해 제기한 손해청구</li> <li>- 1심 진행 중</li> <li>- 회사의 일방적인 법인분할 결정에 대해 지부에서 절차를 통해 쟁의행위를 결정해 파업을 하면서 영업손실, 매출손실, 주총 개최 예정 장소를 점거해 출입문 등을 손괴 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매출이익만 15억원의 손실을 주장하며 일부 청구)</li> </ul>
현대자동차지부	7	2013가합2128 2013나6476	200,000,000	-	68,912,038	64,954,355	2013.03.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구사유 : 2013년 쟁의행위로 작업중단된 데 따른 손해청구</li> <li>- 경과 : 2심 확정(2017.02.07.)</li> <li>- 2013년3월 3공장 안전사고 관련한 현장설명회도중 생산라인가동을 하려는 사측에 대하여 생산라인을 중단시켜 3공장 32라인을 170분간 정지시켰다고 주장</li> </ul>
		2013가합3459 2013나7875	300,000,000		300,000,000	435,780,821	2013.05.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구사유 : 2013년 쟁의행위로 작업중단된 데 따른 손해청구</li> <li>- 소송경과 : 2심 확정(2017.02.07)</li> <li>- 근무형태변경에 관련하여 반대하여 쟁의행위를 해 2013.4.29. 1공장 11라인 301분, 1공장12라인 273분 생</li> </ul>

							산중단 했다고 주장한 고정비와 현대자동차 본관건물 계란투척에 대한 청소비로 9,633,524원을 합쳐 3억을 청구함
	2015가합2368 2015나5798	500,000,000		500,000,000	380,122,951	2015.07.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구사유 : 2015년 징의행위로 작업중단된 데 따른 손배청구</li> <li>- 소송경과 : 2심 확정(2017.02.15.)</li> <li>- 2015년7월 1공장 장비고장사고 관련해 재발방지등 대책수립 및 리모델링 관련하여 요구하던 도중 생산라인가동을 하려는 사측에대하여 생산라인 중단시킴 1공장 의장1부 11라인을 116.18시간 정지했다고 주장</li> </ul>
	2015가단17967	200,000,000		200,000,000	124,156,973	2015.07.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구사유 : 2015년 징의행위로 작업중단된 데 따른 손배청구</li> <li>- 소송경과 : 1심 확정(2017.02.28.)</li> <li>- 2015년7월 1공장 장비고장사고 관련해 재발방지등 대책수립 및 리모델링 관련하여 요구하던 도중 생산라인가동을 하려는 사측에대하여 생산라인 중단시킴 1공장 의장1부 11라인을 116.18시간 정지했다고 주장</li> </ul>
	2014가합3975	381,225,760		248,298,910	150,137,201	2014.06.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구사유 : 2014년 징의행위로 작업중단된 데 따른 손배청구</li> <li>- 소송경과 : 1심 확정(2016.12.08)</li> <li>- 1공장 의장11라인 브라켓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 생산라인 가동중 브라켓 용접작업을 하는등 근로자측에대해 아무런 통보도없이 생산라인 가동한것에 대해 재발방지대책서 작성요구를 사측이 거부하며 생라인가동만 진행시킴 이에대해 피고들은 생산라인 가동 중단시킴</li> </ul>

		2019가단120496	120,000,000				2019.9.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구사유 : 2019.9.23. 2공장 22라인 쟁의행위로 작업중단된 데 따른 손해청구</li> <li>- 소송경과 : 1심 진행 중</li> <li>- 노사협약이 완결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사측의 일방적인 차량투입 양산시작 에 따른 쟁의행위를 해 2019.9.23.15:30~2019.9.23.16:31까지 총61분 생산중단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li> </ul>
		2020가단106038	102,000,000				2020.3.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구사유 : 2020.1.31. 1공장 의장11라인 쟁의행위로 작업중단된 데 따른 손해청구</li> <li>- 소송경과 : 1심 진행 중</li> <li>- 노사협약에따른 UPH(시간당생산수)보다 빠른 속도의 컨베이어작동에 대한 쟁의행위로 인해 2020.1.31.18:35~2020.1.31.19:16까지 총 41분 생산중단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청구</li> </ul>
현대자동차비 정규직지회(울 산)	15	2013가합8096	1,153,862,749	-	1,026,570,841	740,261,778	2013.11.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구사유 : 2013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요구 파업에 대한 손해청구</li> <li>- 소송경과 : 1심확정(2016.12.08.)</li> <li>- 대법원 2011두7076 판결(최병승 직접고용 판결)을 근거로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에 대한 특별고섭을 요구했으나, 사측이 원청과의 관계성을 부인. 이에 파업. 시트사업부 1공장 라인 점거에 대한 손해청구</li> <li>- 당초 피고가 47인이었으나 3인을 제외한 44인에 대해서는 소취하함</li> </ul>
		2010가합8552 2014나8394	7,000,000,000		1,000,000,000	831,500,112	2010.12.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구사유 : 2013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요구 파업에 대한 손해청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송경과 : 2심확정(2017.02.24)</li> <li>- 대법원 2011두7076 판결(최병승 직접고용 판결)을 근거로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에 대한 특별교섭을 요구했으나, 사측이 원청과의 관계성을 부인. 이에 파업.</li> <li>- 당초 피고가 323인이었으나 255인을 제외한 68인에 대해서는 소취하함 2심에서 피고 1인에 대해서만 10억원 인정</li> </ul>
	2010가합8200 2014나819 2017다6498	74,997,357		37,498,679	56,793,868	2010.11.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구사유 : 사측주장은 2010.11.17.자 3공장의 생산손실 손배 10억원이라며 청구</li> <li>- 소송경과 : 대법원 계류 중</li> <li>- 당초 1심에서 피고가 28인이었으나 2심에서 2인을 제외한 26인에 대해서는 소취하함</li> </ul>	
	2010가합8446 2013나9475 2017다46274	2,000,000,000		2,000,000,000	1,924,657,534	2010.11.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구사유 : 비정규직 쟁의행위에 연대한 정규직, 상급단체 활동가에 대한 손배</li> <li>- 소송경과 : 대법원 계류 중</li> <li>- 2010.11.15. 시트공장, 1공장 손실분 7,855,000,000원을 주장하며 청구</li> </ul>	
	2012가합5823 2016나3034 2017다49037	146,290,081		87,899,632	67,478,512	2012.08.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구사유 : 2012 비정규직 정규직화요구 파업 건에 대한 손배</li> <li>- 소송경과 : 대법원 계류 중</li> <li>- 대법원 2011두7076 판결(최병승 직접고용 판결)을 근거로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에 대한 특별교섭을 요구했으나, 사측이 원청과의 관계성을 부인. 이에 파업.</li> </ul>	

							<p>공장 의장 11라인 2012.8.14일 88분, 15일 34분, 의장12라인 14일 18분씩 2회 정지. 해당 행위가 불법을 사전모의한 것이라며 손실에 대해 배상 청구.</p> <p>- 당초 지회 외 피고가 4인이었으나 1인을 제외한 3인에 대해 1심 전 소취하, 남은 1인에 대해서는 2심 전 소취하함</p>
	2012가합6246 2017나384 2018다21050	531,381,200		319,228,684	197,910,314	2012.08.27	<p>- 청구사유 : 2012.8.14 1공장 파업 관련 손해청구</p> <p>- 소송경과 : 대법원 계류 중</p> <p>- 당초 지회 외 피고가 32명이었으나 1심에서 8인을 제외한 24인에 대해서는 소취하함, 2심에는 2인을 제외한 지회 외 6인을 대상으로 소제기, 3심에서는 지회 외 1인을 대상으로 소제기함.</p> <p>- 2012년 8월 20일 1공장(만장기사건) 매출손실만 458,999,000원을 주장</p>
	2012가합9795 2016나3003 2017다49020	200,000,000		159,117,853	115,045,281	2012.12.18	<p>- 청구 사유 : 2012.11.29. 1,2,3,4,공장 파업 건/ 2012.12.5 1,2,3,4, KD공장 파업에 따른 손실 청구</p> <p>- 소송 진행 경과 : 대법원 계류 중</p> <p>- 대법원 2011두7076 판결(최병승 직접고용 판결)을 근거로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에 대한 특별교섭을 요구했으나, 사측이 원청과의 관계성을 부인. 이에 파업.</p> <p>2012.12.14 파업지침에 따라 1,2,3,4,공장, 엔진변속기 공장 생산라인 업무방해,</p> <p>- 당초 피고가 지회 외 27명이었으나 1심에서 3명을 제외한 24명에 대해 소취하, 2심에서 남은 3인을 제외,</p>

		2012가합10016 2017나391 2018다20866	95,293,873		55,890,815	34,650,298	2012.12.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구 사유 : 2012.12.14, 1,2,3,4, 변속기 3,4부 투쟁건에 대해 손실을 주장하며 청구</li> <li>- 소송 경과 : 대법원 계류 중</li> <li>- 당초 지회 외 26명에게 청구했으나 1심과정에서 3인을 제외한 23명에 대해 소취하, 2심에서 2명에 대해 소취하, 3심에서 1명에 대해 소취하.</li> <li>- 30.4억원을 손실 주장</li> </ul>
		2013가합5202 2017나407 2018다11053	200,000,000		28,000,000	17,358,994	2013.07.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구 사유 : 2012.12.21 1,2공장 파업건에 대해 청구</li> <li>- 소송 경과 : 3심 확정(2018.01.30.)</li> <li>- 당초 개인 10명에게 청구했으나, 1심 도중 3명 소취하, 2심에서 6명에게 청구하고 1명 소취하. 상고에서 2명에게 제기.</li> <li>- 2012년 12월 21일 1, 2공장, 코일문(해고자) / 12억7천여만원</li> </ul>
		2012가소61738 2013나4845 2014다13730	6,203,282		1,240,657	1,768,495	2012.08.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구 사유 : 2013.7.20 희망버스에 대한 손해청구</li> <li>- 소송 경과 : 3심확정(2014.07.10.)</li> </ul>
		2010가합8156 2014나11119	9,000,000,000		9,000,000,000	13,579,416,124	2010.11.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구 사유 : 2010년 파업에 대한 손해청구</li> <li>- 소송 경과 : 2심확정(2017.02.15.)</li> <li>- 당초 지회 외 개인 26명에게 청구했으나, 2심에서 지회 외 개인 20명에 제기, 이 가운데 2심 도중 16명에 대해 소취하함</li> <li>인지대 등 법률비용 과다 등의 문제로 상고하지 못함</li> <li>부당해고구제신청기각 취소소송(대법원 2008두4367호)에서 2010.7.22 직접고용 대법원 판결. 이후 비슷한 조건의</li> </ul>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원청과 교섭에 나섰으나 사측이 교섭 거부. 이에 쟁의행위 돌입. 쟁의행위 중 CTS공정 파업 과정에서 1공장 생산라인 336시간 가동 중단을 이유로 손배청구..
	2013가단23005 2018나251 2018다41986	45,305,655		23,124,761	9,313,260	2013.08.09	- 청구 사유 : 2013년 파업에 대한 손배청구 - 소송 경과 : 대법원 계류 중 - 당초 개인 65명에게 청구했으나, 1심 진행 중 60명에 대해 소취하, 현재 5명만 남음.
	2020가단112576	64,116,360				2020.6.11.	- 청구 사유 : 2020년 비정규직 파업에 대해 자회사가 도급업체에 제기한 손배청구를 노동자에게 청구 - 소송 경과 : 1심 진행 중 - 현대자동차의 현대차출입시스템변경(모바일 출입증 제도 도입) 저지를 위한 파업 2020.4.22.23:04~2020.4.23.00:10까지의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4공장 의장41라인 피딩공정 작업중단에 의해 대호이앤지는 현대글로벌로부터 손해액을 청구받고, 이 금액을 그대로 노조 개인 4인에게 청구
		51,466,645				2020.01.22	- 청구 사유 : 2020년 비정규직 파업에 대해 자회사가 도급업체에 제기한 손배청구를 노동자에게 청구 - 소송 경과 : 1심 진행 중 - 현대자동차가 현대글로벌비에 52공장 와이어링공정 위탁, 에프유는 현대글로벌로부터 해당 공정 계약(자회사와 도급개념), 여성노동자 2인을 와이어링 공정으로 강제 이동, 촉탁노동자 3인(남성)이 하던 공정에 배치전환한 것을 두고 과중한 업무를 조정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받

								아들어지지 않아 쟁의행위 돌입. 34분 라인이 1차 정지, 4분 2차 정지, 6분 3차정지 된 것에 대해 에프유는 현대 글로벌로부터 손해액을 청구받고, 이 금액을 그대로 노조 개인 5인에게 청구
기아차비정규 직지회	2	2018가합567322	201,000,000	-			2018.09.20	- 청구 사유 : 2018년 불법파견 규탄 파업에 대해 제기한 손해청구 - 소송 경과 : 1심 진행 중 - 기아차비정규직 지회 조합원들이 2018.8. 고용노동부 행정개혁위원회의 시정명령 권고 이후 강제전적 중단, 직접고용, 원청 특별교섭 등을 내걸고 파업을 하면서 플라 스틱공장을 점거했다는 이유로 2018.9.20 지회장 등 임간부 7명에 대하여 2억원(예상되는 손해액이 10억원이 넘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일부청구)의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함
		2015가합543981	909,237,188		542,265,817	226,005,815	2015.07.10	- 청구 사유 : 2015년 전광판 고공농성을 이유로 손해청구 - 소송 경과 : 1심 확정(2016.06.07.) - 구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전광판 주, 명보에드넷에서 청구한 사건. 전광판을 점유하면서 광고재생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감액당하거나 계약을 취소당했다고 주장하며 영업손실, 전기료 등을 청구
유성기업지회	7	2011가합5496 2013나1790 2016다4693	4,023,331,876	-	1,011,505,464	1,178,293,319	2011.10.10	- 청구사유 : 2011년 노조 쟁의행위에 대해 영업손실, 재물손괴, 위자료 등을 명목으로 손해배상청구. - 2011년 창조컨설팅 작전문건이 드러남. 해당 문건에 '작전'의 일환으로 '손배가압류' 적시. 이후 계획 실행 과



							<p>정에서 손배청구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조컨설팅과 관련해서는 유성기업 측, 현대차 임원, 창조컨설팅 대표 모두 유죄 인정됨. 2018년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에서 '노조무력화시도' 과정에서 노동부의 책임 부분을 인정함.</li> </ul>
	<p>2017가소69818 2018가소113560 2020나1117495</p>	<p>21,000,000</p>		<p>1,500,000</p>	<p>423,689</p>	<p>2018.10.2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구 사유 : 2014년도 노동조합활동에 대해 명예훼손, 폭력 등을 사유로 청구</li> <li>- 소송 경과 : 2심 진행 중</li> <li>- 2014년도 노동조합활동에 대해 형사고소고발 후 2017년 고법 판결이 나오자, 이를 근거로 민사손해배상을 건 사건. 노동자 개인에게, 사측 관리자 개인이 손배를 건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사실상 개인이 소송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도 있으며(녹취 확인). 2017년 유시영 회장 부당노동행위 구속 확정 이후 순차적으로 들어왔다는 점에서 보복조치로 의심됨.</li> </ul>
	<p>2017가단61476 2018가단113672</p>	<p>20,420,000</p>		<p>500,000</p>	<p>132,787</p>	<p>2017.11.0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구 사유 : 2014년도 노동조합활동에 대해 명예훼손, 폭력 등을 사유로 청구</li> <li>- 소송 경과 : 1심 판결(2020)</li> <li>- 쟁의행위 과정에서 페인트, 락커를 활용했다는 이유로 '특수손괴', 내용을 이유로 '모욕' 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해당 사건은 2014년도 노동조합활동에 대해 형사고소고발 후 2017년 고법판결이 나자 이를 근거로 손배 청구. 유시영회장 구속 확정 이후 민사손배를 건 사건. 당초 36명의 개인을 대상으로 손배청구를 했으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페인트 부분에 대해 '책임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남. 이후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소취하 후 진행.</li> </ul>

		2018가단53670 2018가단113030	33,200,000		2,100,000	584,398	2018.04.02	- 청구 사유 : 2015년도 노동조합활동에 대해 명예훼손, 폭력 등을 사유로 청구 - 소송 경과 : 1심 판결(2020) - 2015년 노동조합활동 과정에서 상해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형사고소고발 진행. 고법판결 이후 위자료 명목으로 손해청구. 당초 14명을 대상으로 손해청구를 했으나, 이후 4명에 대해서는 취하.
		2018가소63527 2018가소113553	10,000,000		2,350,000	547,991	2018.04.13	- 청구 사유 : 2015년도 노동조합활동에 대해 명예훼손, 폭력 등을 사유로 청구 - 소송 경과 : 1심 판결(2020) - 2015년도 형사고소고발사건에 대해 2016년도 판결을 근거로 2018년도에 손해청구한 사건.
		2018가소60580 2018가소114334	12,400,000		2,200,000	522,487	2018.01.19	- 청구 사유 : 2015년도 노동조합활동에 대해 명예훼손, 폭력 등을 사유로 청구 - 소송 경과 : 1심 판결(2020) - 2015년 노동조합활동 과정에서 폭행, 모욕 행위가 있었다며, 형사고소고발. 해당 건에 대해 2016년 형사판결을 근거로 2018년 민사손배 제기. 손배 제기 시점이 형사 판결로부터 3년 뒤이고, 유시영 회장 구속 확정 이후 제기한 손해인 점, 원고 개인 중 일부가 본인이 원고인 줄 모르는 점 등에서 '보복조치' 성격의 손배로 의심됨.
		2018가소62388 2018가소113577	8,200,000		1,200,000	193,415	2018.03.21	- 청구 사유 : 2015년도 노동조합활동에 대해 명예훼손, 폭력 등을 사유로 청구 - 소송 경과 : 1심 판결(2020)
한진중공업지	2	2011가합1647	15,863,326,752	-	5,959,383,627	8,919,264,360	2011.01.25	- 청구 사유 : 2010년 정리해고 반대파업에 대한 손해청

회							<p>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송 경과 : 1심확정(2014.02.05.)</li> <li>- 2009.12.18 352명 구조조정 시도 불발, 이후 2010.12.15 생산직 1,167명중 400명 감축계획을 통보, 노조가 인력조정에 협조하지 않는다며 2011.1.13 노동자들에게 해고예고 통보 후 2011.2.14 170명 정리해고 강행. 이에 노조는 2010.11.8부터 일주일 총파업, 2010.12.20 희망퇴직 및 정리해고 실시 반대 전면 총파업 돌입. 사측은 정리해고 반대파업은 정의행위 정당성이 없다며 손해청구. 노조는 경영위기에 대해 사측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음을 지적하며 반박.</li> </ul>
			12,000,000		12,000,000	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구 사유 : 2011년 정의행위에 대한 손해청구</li> <li>- 소송 경과 : 1심 확정</li> <li>- 2011년 집행부 파업 시 노무사무실 기물이 파손되었다며 청구</li> </ul>
일진다이아몬드지회	4	2019가단250698	187,921,664		100,000,000	2019.11.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구 사유 : 2019.09.04.자 일진디엔코(본사로비) 점거에 관한 손해배상</li> <li>- 소송 경과 : 화해권고결정(2020.08.15.)</li> <li>-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 1억원 결정 수용</li> </ul>
		2019가합5826	500,000,000			2019.09.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구 사유 : 2018년 공장 점거파업에 대한 손해배상</li> <li>- 소송 경과 : 1심 진행 중</li> <li>- 2018년 노조설립 후 '근로기준법 준수', '작업장 안전' 등을 요구하며 교섭에 나섰으나 결렬. 이후 파업 돌입. 347일 점거파업 과정에서 사측은 영업손실, 업무방해 등으로 12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5억원을 청구. 노조는 파</li> </ul>

							업 47일만에 대체인력투입하는 등 실제 손실을 사측에서 입증하지 못했음을 주장.
		2019가단251608	122,640,000			2019.11.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구 사유 : 2019년 본사로비 점거로 인한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입주민 손해청구</li> <li>- 소송 경과 : 1심 진행 중</li> <li>- 2019.9.4 일진다이아몬드 본사가 위치한 마포구 소재의 일진디엔코 건물 로비에서 쟁의행위를 진행. 이를 두고 해당건물 입주민(상가 등) 146명이 손해청구</li> </ul>
		2019가소473266	11,645,874			2019.07.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구 사유 : 일진빌딩 정문 스티커제거비용 청구</li> <li>- 소송 경과 : 1심 진행 중</li> <li>- 2019.9.4 일진다이아몬드 본사가 위치한 마포구 소재의 일진디엔코 건물 로비에서 쟁의행위를 진행. 이과정에서 정문 로비에 스티커를 붙인 것에 대해 제거비용을 청구</li> </ul>
금호타이어비 정규직지회	1	2019가합50231	500,000,000			2019.01.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구 사유 : 2018,2019년 파업에 대한 손해청구</li> <li>- 소송 경과 : 1심 진행 중</li> <li>- 2018.12.21 미화업무 4개 협력업체와 일방적인 도급계약 갱신 포기. 지부와 노사합의에 따라 비정규직 고용승계 합의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며 쟁의행위 돌입. 이를 두고 불법점거 및 업무방해를 주장하며 손해청구. 사측은 경영위기도 주장. 손해산정 과정에서 매출손실 1일당 2,271,000,000이라며, 우선 5억원을 청구하고 추후 산정해 추가청구할 것을 예고.</li> <li>- 지회 조합원들은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승소함. 그럼에도 사측은 직접고용관계를 인정하지 않음</li> </ul>

아사히비정규 직지회	1	2019가단35236	52,000,000				2019.09.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구 사유 : 2019년 집회에 대해 명예훼손, 손괴로 제기한 손해청구</li> <li>- 소송 경과 : 1심 진행 중</li> <li>- 2019년 개최한 불법파견규탄 집회 과정에서 락카로 "아사히 전범기업" "인간답게 살고싶다" "아사히는 불법파견 책임져라" 등 구호를 도로, 인도 벽면, 명폐에 칠했다는 이유로 손해청구. 손해액은 도로를 갈아엎는 공사를 한 후 공사대금을 청구함. 지회에서 아세톤으로 지울 수 있음을 증명했음에도, 공사 강행 후 손해청구.</li> <li>- 해당 사업장은 노동부의 직접고용 시정명령 거부로 과태료 17억8천만원이 부과되고, 불법파견 1심에서 패소했음에도 직접고용을 이행하지 않음</li> </ul>
DKC지회	1	2011가합691	2,500,456,043	1,000,000,000	891,730,557	1,405,028,662	2011.04.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구 사유 : 2008년 총파업 참여 대한 손해청구</li> <li>- 소송 경과 : 1심확정(2014.03.07.)</li> <li>- 사측에서 민주노총 총파업 참여를 독려했다는 사유로 노조간부 6인을 2019.12.31자로 해고. 산별 총파업이 단협 등을 주제로 하더라도 광우병 촛불과 함께 한다는 이유로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주장. 이로인한 업무방해 등 손해배상을 청구</li> <li>- 항소했으나, 가압류의 압박 등으로 피고 소취하. 1심 확정으로 재판종결.</li> </ul>
서라벌지회	1	2015가단12614	139,404,000	-	-		2015.08.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구 사유 : 2014년 파업에 대한 손해청구</li> <li>- 소송 경과 : 1심 화해권고결정(2018.02.08.)</li> <li>- 2014.5 직원 21명이 민주노총 일반노조 경주지부 서라벌지회 설립. 이후 근로기준법 준수하며 교섭을 요구했으나, 결렬. 경북지노위 조정신청 결렬 이후 파업 돌입</li> </ul>

								(8.22-11.21). 사측은 직장폐쇄(9.15-12.1). 이후 다시 교섭 결렬로 2015.1.9 다시 파업 돌입. 사측은 2014.6.17이후 노조의 쟁의행위 과정에서 무단침입과 점거, 영업방해, 업무방해 등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손해청구.
보험설계사지부	1	2020가소459745	20,000,000				2020.09.29	- 청구 사유 : 2020년 집회시위 등에 대한 명예훼손 위자료 손해청구 - 소송 경과 : 1심 진행 중 - 잔여수당미지급에 대해 집회시위한 보험설계사와 소속 지부가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을 했다고 회사와 전임지점장에게 각1천만원씩 위자료를 배상하라며 청구.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게시, 1인시위 페이스북 게시 등을 언급
전국택배연대노조	2	2018가합582246	200,000,100	-	-		2018.11.16	- 청구 사유 : 2018년 파업에 대한 손해청구 - 소송 경과 : 1심 진행 중 - 울산파업 건. 2017년 11월 택배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며 '택배노조 설립필정' 교부받았으나, CJ대한통운에서 노동자성을 부정. 블랙리스트, 노조탈퇴 종용 등 부당노동행위 발생. 쟁의행위 참여 조합원 25%를 업무방해로 고소 이후 2018년 연달아 민사손배진행. 해당사건은 2018년 7월 사측의 '물량빼돌리기' 행태에 노조가 항의한 것을 두고 업무방해 등을 명목으로 손해청구. 당시 경찰이 울산 조합원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테이저건을 사용해 과잉진압 비판이 있었음.
		2018가단505981	85,596,219		0		2018.02.09	- 소송 경과 : 1심 사측 패소, 항소했으나

								<p>2020.4.1자로 사측 소취하.</p> <p>- 분당파업 건, 2018년 2월 12일 파업 첫날 오전 분류작업 진행하고 오후 배송 거부한 것은 물품을 절도 및 횡령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하며 형사 고소, 노조는 “분류작업을 거부하면 터미널 마비될 것이 우려되기에 분류작업을 진행하고 배송을 하지 않는 부분파업을 선택” “문을 잠그지 않았고 지점과 고객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물품을 인도” “사측이 물품 인도를 요청한 적이 없다”고 대응.같은 건으로 손배 청구.</p>
틀게이트지부	1	2019가단36260	136,675,000	-	-	2019.10.22	<p>- 청구 사유 : 2019년 김천본사점거파업에 대한 손배청구</p> <p>- 소송 경과 : 1심 진행 중</p> <p>- 한국도로공사가 통행료수납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에 대해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직고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각 직원별로 조건이 다르다는 등의 이유로 직고용을 미루어 음. 그러던 중 자회사를 통한 고용을 안으로 내놓았으나, 대법원 판단에 따라 직고용할 것을 요구하며 조합원들이 거부하고 쟁의행위 돌입. 공사는 자회사 입사를 스스로 거부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쟁의행위를 불법으로 규정, 본사점거 과정에서 현관문, 화분, 집기 등 훼손하였다며 손배청구. 당초 1억원 청구에서 추후 확장할 것을 예고.</p>	
원종복지관	1	2015가단21839	22,000,000	-	6,600,000	2015.09.10	<p>- 청구 사유 : 2015년 이후 집회시위에 대한 명예훼손 위자료 손배청구</p> <p>- 소송 경과 : 강제조정결정(2020)</p> <p>-일자리성차별을 당한 동료의 편에 섰다는 이유로 계약</p>	

							<p>해지. 이후 노조에 가입하고 지역대책위를 꾸린 뒤, 국가 인권위 진정, 집회, 1인시위, 기자회견 등 노동권 행사하자, 해당 행위로 명예훼손을 입었다며 복지관 원장이 위자료 명목으로 손해청구. 1심에서 재판부는 페이스북 등에 노동자가 1인시위를 공유하거나 매체나 난 기사를 공유하는 등 행위를 한 것 가운데 22건에 대해 각 3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함. 2천여만원을 배상할 것을 주장하며 원장 측이 항소했으나 강제조정결정으로 종결됨.</p> <p>- 장기해고로 인해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기에 시민모금을 통해 변제함</p>
울산과학대민 들레분회	2	2014카합596 2014카합779 2014타기1229	767,000,000	767,000,000	-	2014.07.29	<p>- 청구 사유 : 2014년, 2015년 퇴거단행,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가압류 등 청구</p> <p>- 소송 경과 : 가압류 결정 확정(2015.07.18.)</p> <p>2014년 6월 16일, 생활임금 쟁취를 걸고, 울산대민들레분회 파업 돌입. 본관 앞 철야농성 시작, 같은 해 10월 20일, 본관 앞 천막농성 시작</p> <p>- 2015년 5월 18일, 본관 앞 농성장 강제철거, 다음 날, 돌고래 분수대 앞 농성장 2차 강제철거 등 거듭된 철거로 인해 경찰연행 및 부상 다수 발생</p> <p>- 2015년 7월 20일부터 현재까지 울산과학대 정문에서 현재까지 노숙농성 중</p> <p>- 퇴거단행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결정, 2015년 7월 10일부터 20일까지 1인당 30만원 씩 11일치 부과(17명).</p> <p>- 이후 정문 앞 농성장 부지가 학교부지로 인정되어 2015년 7월 20일부터 2016년 5월 27일까지 1인당 8천2</p>



								백만원씩 가처분 및 압류(18명)
		2015카합243	50,000,000	50,000,000			2015.05.26	- 청구 사유 : 2015년 출입금지 가처분 가압류 - 소송 경과 : 인용(2015.07.07.)
민주노총	2	2016가합508015	386,672,019	-	46,622,681		2016.02.16	- 청구 사유 : 2015년 민중총궐기에 대한 손배청구 - 소송 경과 : 화해권고결정(2019.08.07.) - 2015년 민중총궐기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민중총궐기 본부와 민주노총, 간부 개인 6명을 대상으로 대한민국(경찰과 개인 90여명이 손배청구. 해당 사건에 대해 2018년 경찰청 인권침해진상조사위원회에서 소취하등을 권고했으나, 법원조정(화해권고)으로 종결됨. - 조정결정 내용 : 46,622,681원을 2019.9.30부터 2020.8.31까지 지급
		2015가단5304696	22,182,310				2015.09.03	- 청구 사유 : 2015 노동절 집회에 대한 손배청구 - 소송 경과 : 1심 진행 중 - 2015년 노동절 집회에서 세월호 진상규명 요구하는 과정에서 경찰버스 손괴등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행위 대상자가 아닌 집회 주최자를 대상으로 청구함
무노조	1	2019가합559496 2020나2037353	250,000,000	-	10,000,000	678,904	2019.08.28	- 청구 사유 : 2013년부터 본사 앞 1인시위, 집회시위에 대한 손배청구 - 소송 경과 : 2013년부터 본사 앞 1인시위, 집회시위에 대한 손배청구 - 현대기아차 자동차 판매대리점 판매사원인 피고가 2013년 내부고발을 사유로 해고된 데 대해 본사의 책임을 요구하며 본사 앞 1인시위 및 집회시위를 한 데 대해 업무방해와 신용훼손을 사유로 손배청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심에서 현대, 기아차에게 각 500만원 총 1천만원 선고. 사측 항소로 2심 진행 중</li> <li>- 1심판결문 주문 1항에 "피고는 별지2기재장소에서 별지2인용 기재 각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행위를 하게 해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이 있음</li> </ul>
--	--	--	--	--	--	--	--	--

### 3. 별도집계 건 :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해소된 사건

- 총 13개 사업장, 손해배상청구소송 21건
- 손해배상청구금액(누적치) 총 117,530,357,093원
- 가압류 금액 총 21,105,355,628원

[표-4] 조직별 해소현황(2019.12.31.까지 기준)

(\* 민주노총-손잡고 집계)

조직별			청구금액		비고
구분	건수	사업장	손배청구액	가압류액	
금속	14	7	28,325,214,795	7,830,436,100	가압류(국가손배)
공공운수노조	6	4	64,674,142,070	10,484,919,528	
언론노조	1	1	19,510,220,000	2,200,000,000	
지역본부	1	1	5,020,780,228	590,000,000	
계	22	13	117,530,357,093	21,105,355,628	

[표-5] 노동현장별 상세현황(2019.12.31.까지 기준)

(\* 민주노총-손잡고 집계)

조직별		손배가압류금액		기간		종결사유
사업장	사건번호	청구금액	가압류	시작일	종결일	
쌍용차지부	2009카단4408 2009카단4409	-	7,830,436,100	2009.12.07	2019.07.22	국가손배 건 가압류만 해소 2019년 1월 복직노동자 임금가압류 문제 발생. 노조와 시민사회에서 손배취하 및 가압류 해제 요구. 2019.7. 가압류만 해제
KEC지회	2011가합28385	14,349,884,946	-	2011.03.25	2019.10.20	2010년 파업에 대한 손배청구 30억원 조정결정(2016.9.20.), 3년의 임금압류로 변제완료 2018.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에서 노조무력화 사례로 조사결과 포함했으나 손배 압류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함.

갑을 오토 택지 회	2016가합1021 18	1,403,387,080		2016.08.12	2018.10.27	경영상의 위기를 주장하며 경비업 무 외주화, 노조무력화 시도 등을 벌임. 2018.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에서 부당노동행위 구속 사례로 적 시. 구속 이후 민형사소송에서 노조 가 승소 중, 교섭재개, 노조의 양보 로 법원조정성립하며 종결
	2016가합1028 42	8,609,961,684		2016.10.21	2018.10.27	
	2016가합1029 72	329,562,362		2016.11.02	2018.09.21	
하이 디스 지회	2015가단2460 9	20,771,950		2015.10.27	2018.02.14	2015년 노동절 집회 참가를 이유로 청구, 두 차례 외투자본이 들어와 기술유출을 겪음. 이후 경영상 위기 를 사유로 정리하고 돌입. 해고무효 소송을 진행하던 중 사측에서 공장 을 팔아버림. 소송에서 이겨도 돌아 갈 곳이 없어진 상황에서, 2018년 법원 조정결정. 이 과정에서 민형사 소송을 취하. 해당 결정에 '하이디 스'와 관련해 추후 언급하지 말 것 이 명시되어 있음
	2015가단1421 29	100,000,000		2015.11.25	2018.02.14	
	2015가합1149 5	2,178,945,183		2015.11.26	2018.02.14	
	2015가합1107 52	400,000,000		2015.11.24	2018.02.20	
현대 차 비정 규직 지회( 울산)	2013가합5523 2015나3027	107,045,705		2013.08.01	2017.08.23	신규채용 정규직화를 조건으로 비 정규직지회와 합의를 하고도, 지회 소속 조합원 가운데 일부를 제외시 킴. 해당 사건은 2심선고를 1달 남 기고서야 합의 후 소취하로 종결.
현대 자동 차아 산사 내하 청지 회	2010가합7778 2013나1882 2016다12748 2018나273 2019다15984	56,757,085		2010.12.21	2019.09.26	2심에서 노조의 책임을 조금만 인 정했지만, 대법원에서 책임인정되지 않은 피고들에 대한 손해를 다시 심리하도록 파기환송. 결국 2016년 2심 선고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인정하면서 종결됨. 2019년 변제 후 종결. 2010년 불법파견 규탄 파 업..
현대 차지 부	2017가단6976 4	200,000,000		2017.11.28	2019.01.03	교섭으로 해소
	2018가합2095 4	250,000,000		2018.02.23	2019.01.03	
현대 중공 업지 부	2017가단4606	18,898,800		2017.03.16	2018.10.25	사측의 소취하로 종결
	2018가합2474 1	300,000,000		2018.08.22	2019.04.27	

경북 대병 원분 회	2017가합2027 88	500,000,000		2017.04.13	2019.03.27	교섭결렬, 노조는 '공공기관 방만경영' 등의 개선을 요구하며 쟁의행위 돌입한 데 대해 업무방해, 손괴 등을 주장하며 형사고소 및 손해청구, 형사건 패소 후 민사 취하함..
부산 교통 공단 노동 조합	2017가합4083 5	500,000,000		2017.01.20	2017.11.24	2016년 9/27부터 12/26까지 22일간 공공운수노조가 주도한 총파업에 참가했다며, 이를 정부의 '성과연봉제' 반대를 위한 정치파업으로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노조는 파업의 주된 목적이 쟁의행위의 목적사항인 단협(임금, 인력충원 등)과 관련있기에 불법이 아님을 주장. 소제기 10개월만에 소 취하로 종결
철도 노조	2009가합1600 1 2017나423	7,030,010,000		2009.12.04	2018.07.31	2018년 신입 사장이 취임한 뒤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철도발전위원회를 출범, 2018. 5.경 철도발전위원회는 '대립적 노사관계의 상흔치유'를 권고하면서 해고자, KTX승무원, 징계, 손해문제 등에 있어 전향적 해결을 철도공사에 요구,
	2013가합3635 4	16,208,616,000	10,484,919,528	2013.12.19	2018.06.15	철도발전위원회는 철도노사에게 2018. 6. 8. 2009년 파업, 2013년 파업에 대한 손해청구 쌍방향소취하를 권고. 2018.7.31 법원 강제조정으로 종결.
	2016가합3787 7	40,319,000,000		2016.11.14	2018.06.15	2016년 건은 1심 진행 중 2018. 5. 24.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철도공사가 제기한 소를 취하하고 철도노조가 이를 동의하는 것으로 조정안을 제시. 2018.6.8 철도발전위원회는 철도노사에게 법원 조정결정을 수용할 것을 권고. 화해조정결정으로 종결.
항공 항만 노조	2019가단2079 73	116,516,070		2019.02.15	2019.09.24	대한항공 청소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 준수를 요구하며 노조를 결성. 이후 법적으로 보장된 휴게시간을 사용한 것을 두고 '일병적인 휴게시간 변경 행위'라며 해당시간 대체인력에 대한 연장근무 수당, 출퇴근

						교통비 지급 비용을 노동자들에게 손배청구. 이케이맨파워는 대한항공 자회사격인 한국공항(주)의 도급업체임. 7개월여 노조의 투쟁으로 소취하. 사건 종결.
MBC 본부	2012가합3891	19,510,220,000	2,200,000,000	2012.03.05	2018.02.13	2012 공영방송 공정성 회복을 요구한 노조의 파업을 두고 목적 등이 정당하지 않다며 불법을 주장. 사측이 195억여원의 손배를 청구.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파업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 원고 완패. 이후 해고자 복직. MBC 정상화 과정에서 2018년 사측이 소취하해 종결
동양 시멘트 트지 부	2016가합5013 2	5,020,780,228	590,000,000	2016.03.16	2017.11.08	2015년 비정규직노동자들이 노조설립, 원청에서 도급계약해지. 근로자 지위확인소송 진행 중 파업 등을 이유로 손배청구. 도중 직접고용 시 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강접강제 이행금 부과 결정에도 불복하다가 이후 2017년 노사합의로 직고용, 민형사소송을 모두 취하하기로 합의하면서 종결

#### 4. 쟁점 정리

1) 문재인 정부에서 새로 제기된 손배가압류의 특징(2017.6 이후~)

- ① 현황 : 14개 사업장, 28건, 청구금액 6,876,797,932원, 가압류 없음.
- ② 노동유형 : 정규직,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 노조없는 노동자까지 유형 확대
- ③ 청구사유 : 모욕, 명예훼손에 대한 정신적 위자료 사유(12건),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성 부정 등 손배(7건),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성 부정 등 손배(3건), 무노조 노동자(1건), 쟁의행위에 대한 업무방해 등 손배(5건)
- ④ 노동권행사 이유 : 불법파견, 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 준수 요구, 작업장 안전 문제 등

2) 문재인 정부 행정기관 개혁위원회에서 손배가압류의 원인이 된 사건이 언급된 사례

##### ①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 불법파견, 노조무력화시도 관련 조사대상 가운데 관련사건으로 손배가압류를 경험한 노동현장 : 현대차지부, KEC지회, 발레오만도지부, 유성기업지회, 갑을오토텍지회, 언론노조MBC지부, 철도노동조합, 기아차비정규직지회, 현대차비정규직지회, 보쉬전장지회, 발레오만도노조, 이마트노조.(이 가운데, KEC지회, 기아차비정규직지회, 현대차비정규직지회는 조사시기 임금압류가 되거나 손배가 확정됨)
- 현재도 손배가 남아있는 노동현장 : 현대차비정규직지회, 기아차비정규직지회, 유성기업지회, 현대차지부.
- 이 외에도, 같은 사유로 노동조합활동을 하다가 손배가압류를 받은 사례들이 추가됨.(위 1)참고)
-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활동 종료 이후 권고안에 대한 이행 검토가 요구됨.

##### ②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

- 2018.8.28. 진상조사위 결과 발표, 쌍용자동차 진압 당시 국가폭력이 있었음을 인정하며, 경찰이 제기한 손배사건에 대해서도 소취하 등을 권고함
- 2019.07.22. 가압류를 해제조치 했으나, 복직노동자의 임금압류 등으로 여론이 악화된 이후에 조치했다는 점, 근본적 원인인 손배청구에 대해서는 철회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제기.
- 올해 취임한 김창룡 경찰청장이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며 사실상 개혁위원회 권고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비침.

##### ③ 국정원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 사찰 문건

- 민주노총 뿐 아니라, 한진중공업지회, 유성기업지회 등 현재 손배가 존재하는 노동현장에 대한 사찰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후속대책이 거론되지 않고 있음

3)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손배가압류’ 문제에 대한 국제기구 권고

① 2017. 6. 17 ILO 330차 이사회 채택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 보고서」

“파업은 본질적으로 업무에 지장을 주고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라는 점과 불의를 인식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사용자를 압박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서 파업권을 행사하기로 선택한 노동자에게도 상당한 희생을 요구한다는 점을 강조”

95. 제소단체들은 2009년과 2013년 12월 파업에 관해 철도공사가 철도노조와 조합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105억 원 상당의 노조의 통장과 재산을 가압류 조치했다고 지적했다. 제소단체들은 특히 이러한 손해배상 소송이 업무방해죄 적용에 따른 벌금과 결합되어 심각한 금전적 압박으로 노동조합의 유지 자체를 위태롭게 할 뿐 아니라 위협 효과를 발휘하며 정당한 노조활동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이 점에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이미 파업은 본질적으로 업무에 지장을 주고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라는 점과, 불의를 인식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사용자를 압박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서 파업권을 행사하기로 선택한 노동자에게도 상당한 희생을 요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365차 보고서, 577항】.본 사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에 관한 구체 정보가 제출되지 않았고 정부가 해당 혐의에 대해 답변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위원회는 이와 같은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가 노조의 자유로운 활동에 미칠 중대한 효과에 우려를 표하면서 정부가 제기된 혐의사실에 대해 답변할 것을 요청한다. 정부와 제소단체들은 재판 진행에 관한 후속 정보를 법원 판결문 사본과 함께 제출할 것을 요청한다. 위원회는 정부가 이 문제에 관한 사용자 단체의 견해를 구할 것 또한 요청한다.

② 2017. 10. 9 UN사회권규약위원회 제4차 대한민국 심의 최종견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지속되고 있는 등 쟁의행위 참가 노동자를 상대로 한 보복조치” “쟁의 행위 참가 노동자에 대해 이루어진 보복 조치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실시할 것을 권고”

파업권  
38. 위원회는 (a) 합법파업이 되기 위한 요건이 지나치게 제약적이어서 당사국 내에서 파업권을 행사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로막혀 있다는 점 (b) "업무방해죄"를 적용한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지속되고 있는 등 쟁의행위 참가 노동자를 상대로 한 보복조치에 관한 보고 (c) 파업이 금지되는 "필수서비스"에 관한 정의가 넓다는 점에 우려한다.  
39. 위원회는 당사국이 합법파업의 요건을 완화하고 필수서비스의 범위를 엄격하게 규정하여 파업권이 효과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당사국이 파업권 침해에 이르게 되는 행위를 자제하고 쟁의행위 참가 노동자에 대해 이루어진 보복 조치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4)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손배가압류 남용 문제

① 노동3권 침해 및 노조 무력화 수단으로 악용, 실제 효과 발휘

- 쟁의행위는 그 자체가 기본권의 행사인 동시에 헌법에 보장된 행위임. 따라서 쟁의행위로 발생한 재산상 손해는 원천적으로 배상책임을 묻지 않도록 해야 노동3권을 온전히 보장할 수 있음
- 그러나 여전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정당한 쟁의행위’라는 선을 그어 노동3권



을 온전히 보장받기 어려운 현실임. 현행 노조법은 △점거 등 쟁의방식에 대해 불법으로 규정하거나, △정리해고 반대, 민영화 반대, 공정방송 요구 등 쟁의행위의 범위에 대해 협소하게 규정해 불법으로 낙인찍거나 △공권력 개입에 대한 책임을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 개개인에 묻는 등 여전히 쟁의활동 전반을 제약하고 있음.

- 쟁의의 불법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무력화하는 사례는 여전함. 특히 사측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목적이 말 그대로 ‘손해를 보상받기 위함’이 아니라 ‘노동3권을 무력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사례가 노동현장에서 목격되고 있음.
- 초창기 교섭 압박 수단으로 활용되어, 교섭이 마무리되면 청구소송을 중단하는 등의 방식으로 손배소를 악용했다면 이명박 정부 이후에는 손해배상 청구 교섭타결 여부와 관계없이 소송을 유지하여 노동조합은 물론 조합원 개인의 노동권까지 무력화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음.
- 공통적으로 ▲노동조합 탈퇴를 조건으로 손배소 취하를 제안, ▲수십억 손해배상을 근거로 해서 ‘근로지위확인소송’을 취하하도록 조건부 협상, ▲노조해산 및 해고자복직투쟁을 포기하도록 종용하기도 하는 등의 사례도 계속되고 있음.

## ② 소남용 수준의 손배청구와 받아주는 사법부의 문제

- 과다한 청구금액에 대해 사측의 ‘불법’이라는 주장만으로 소송이 가능한 현실
- 개인 또는 노조가 ‘별 수조차 없는’ 금액을 사법부가 인정. 갚을 수 없는 원금은 확정일까지 5%, 그 다음날부터 12%(판결시기에 따라, 15%, 20%까지 적용)라는 이율이 발생. 지연이자가 선고금액을 역전하는 현상 발생
- 노조법은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명시하여 쟁의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경우와는 달리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요구하지 않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도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요구하고 있음.
- 기자회견, 1인시위, 집회 등 노동조합활동 전반에 대해 모욕, 명예훼손 등을 명목으로 제기하는 손배소 역시 계속되고 있음.

## ③ 대법까지의 비용(긴 재판시간, 많은 법률비용)

- 최초 손배제기 시기부터, 종결되기까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감. 이는 노사관계에서 손배소는 비용적 측면만으로도 노동자에게 철저히 불리한 구조임. 상대적으로 비용(시간, 돈)을 지불할 능력이 많을수록 소송에서 유리함
- 긴 소송기간은, 노조무력화 시도로 이어지기도 함.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권리포기(노조탈퇴, 해고무효소송-근로자지위확인소송 포기 등)를 강요당하는 것도, 긴 소송시간이 영향을 미침.
- 더구나 소가에 따라 높아지는 소송비용은 특히 고액이 청구되는 노동자 손배소송의 경우, 노동자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일 수밖에 없음

## 손배가압류 노동자들의 피해기록

※ 본 기록은 2019 손배가압류 노동자 236명 피해실태조사 <값을 수 없는 돈, 돌아오지 않는 동료>의 설문조사 과정에서 기록한 주관식 답변을 옮긴 내용입니다(해당 실태조사 자료집은 별첨으로 첨부합니다). 조사기간 이후 손배청구가 제기되어 손배를 경험한 노동자의 답변을 추가했습니다.

- 참가자 1      회사가 손해 본 사실이 없는데 손해를 봤다고 특히 노조간부들에게 소송을 제기한 것
- 참가자 2      손해배상이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이루어지면 가족과 친지들에게 피해가 갈까 걱정이다
- 참가자 3      심리적 압박감
- 참가자 4      심적 부담감
- 참가자 5      어디 가서 내 처지를 말할 수가 없다
- 참가자 6      가정 사정에 있는 경제 사정
- 참가자 7      가정을 지킬 수 없을 것이라는 불안감. 8년간의 해고생활
- 참가자 8      아직 가족들은 손해배상에 대해 모르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니다. 만약 손해배상에 대해 알면 많은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가족들에게 숨기는 게 힘이 들었습니다.
- 참가자 9      현재 손해배상 청구가 되고 가압류는 진행되고 있지 않으나 수십억에 달하는 손해배상 판결이 어떻게 될지 불안한 상황이고 손해배상판결이후 경제적 고통 및 심리적 불안감이 극에 달할 것으로 보임
- 참가자 10     친인척, 친구, 계모임 등에서 나를 멀리했다. 계가 깨지기도 했다. 아이가 아버지의 상황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
- 참가자 11     손해배상 청구된 것을 알고 정신적으로 매우 충격을 받았으며 한동안 불안, 초조 공황장애를 겪으며 예전에 처방받은 약을 먹으면서 밤마다 불면증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 참가자 12     의도적으로 분란을 야기한 회사가 이를 빌미로 고소, 고발을 자행하고 판결 후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에 분노함
- 참가자 13     손해배상이 들어오고 가압류가 진행될까봐 마음이 불안했음. 다행이 가압류는 진행되지 않았지만 이후라도 매우 불안함
- 참가자 14     신경이 예민해서 가족들에게 폭언 및 신경질적으로 변한다.
- 참가자 15     노동조합 활동하는 게 죄인가 (검찰편파수사) 노동조합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가압류라니 정말 스트레스입니다
- 참가자 16     예상했던 일. 감수해야 하는 일. 아직 가압류/압류가 진행된 것은 아니라 잘 모르겠음. 다만 혼자만 당한 것이 아니라 동지들이 느낄 부담감 등이 걱정되고 신

경쓰임

- 참가자 17 민주노조파괴 수단으로 자행된 손해배상가압류로 조합원 이탈, 탈퇴, 조직의 균열, 이로 인한 민주노조 사수투쟁에 영향이 미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
- 참가자 18 정신적 스트레스
- 참가자 19 심적으로 고통스럽고 혹시나 손해배상 때문에 가정에 영향을 미칠까봐 조바심 낸 적이 많이 있었다
- 참가자 20 경제적 어려움과 가정생활
- 참가자 21 항상 불안함 마음이 생김
- 참가자 22 가족들에게 미칠 영향
- 참가자 23 회사나 국가가 노동자라는 이유로 핍박하는 것
- 참가자 24 심리적 압박감이 심해서 깊은 잠을 잘 수가 없다. 그로인해 하루 일과를 하는데 온몸이 피로해 힘들다. 매사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던 내가 부정적이고 소극적으로 변했다. 평생을 벌어도 갚지 못할 손해배상 가압류금액. 노동자들이 헌법에서 보장한 노동3권을 자유로이 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기업과 국가가 손해배상 가압류를 하지 못하도록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
- 참가자 25 위장 이혼을 생각해보았다. 사해 행위로 걸린다는 변호사님 면담 결과 확인 후 어쨌든 싸움을 승리하고자 노력해야 된다는 결심을 했다
- 참가자 26 가족과의 화합, 아이들의 미래 등 손해배상으로 인해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고민이 많았다.(가압류가 들어올지 걱정됨)
- 참가자 27 실제로 가압류가 들어올까 걱정된다
- 참가자 28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불안감, 자본에 대한 분노
- 참가자 29 가족이 그런 사실을 알았을 때 이해시키는 과정이 힘들고 법원에서 우편물이 올 때마다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음
- 참가자 30 노동자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자본 측이다. 노동자들은 그저 부당하다고 항변하지만 가진 자들을 위한 법은 결국 항변하는 노동자들을 유죄로 낙인찍는 지금의 현실이 가장 슬프다고 생각함
- 참가자 31 회사에서 하나밖에 없는 집을 압류할까 걱정. 가족들에게 피해가 갈까 걱정. 노동조합 조합원에게 전가될까 걱정, 손해배상가압류로 많은 걱정 속에 살고 있습니다. 금속노조 협약에 정당한 쟁의행위로 손해배상가압류 금지인데 지켜지지 않는 대한민국, 국가 신뢰도가 바닥을 찍는 이유다.
- 참가자 32 정신적으로 많이 불안하고 경제적으로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 참가자 33 정신적으로 늘 몸과 마음이 묶여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매사에 행복하지 않았다. 놀아도 즐겁지가 않다!
- 참가자 34 노동조합 간부 활동을 하면서 징계 및 손해배상을 당해보니 나라 및 회사 모두 썩어 빠졌더라는 비관적인 생각이 많이 든다.
- 참가자 35 법원에서 오는 송달물이 집으로 전달되어 집에 식구들이 걱정하는 것, 가압류로 인한 생활고

- 참가자 36 당시 지회 대의원이었고 조합원(임금삭감자)을 대변하여 앞장섰지만 당사자(삭감자)는 자리를 피했고 뒤를 돌아보았을 때 나 혼자였고 당사자는 피한 손해배상, 다행이지만 뭔가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나는 간부다"라는 마음으로 추스림.
- 참가자 37 직장동료들과의 관계가 매우 불편해졌다. 노조파괴가 8년간 지속되면서 동지애가 사라지고 "나만 아니면 돼!" 라는 개인주의가 확산되었다. 조합과 간부에게 가해진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손해배상대상자가 책임져야한다는 주장이 늘어나고 있다. 조합 활동 역시 앞에 나서길 두려워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어 자본의 계획이 실현되어가고 있는 느낌이다.
- 참가자 38 불안감 증폭, 불면증 발생
- 참가자 39 내 인생의 오점
- 참가자 40 생계와 미래의 불확실
- 참가자 41 손해배상을 당할 정도의 소송이 아닌데 당해서 억울했다
- 참가자 42 생활하기 힘들다
- 참가자 43 법원에서 등기 올 때마다 그 자체가 스트레스이다
- 참가자 44 창피하고 금액이 너무 부담스럽다. 문 앞에 붙어있는 등기를 보면 너무 스트레스 받고 주변 사람들 보기에 창피하다
- 참가자 45 경제적 부담감, 사회적 불신
- 참가자 46 손해배상소송자체가 삶에 큰 위협과 불안을 줍니다. 더욱이 경제가 어려웠던 상황이거나 빛이 있거나. 수입이 적은 상황이라면 그 부담과 위협은 배가 됩니다. 당시 파업과 임금 삭감 등으로 임금이 반 토막인 상황에서 꾸준하게 지불을 할 수 밖에 없는 빛의 이자와 세금, 그리고 이미 은행 거래가 중지된 상황에서의 손해배상가압류는 벼랑 끝에 있는 저를 밀어 내는 것과 같습니다. 더군다나 가장의 입장으로 죽을 것만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 참가자 47 사측에서 제기한 손해배상은 명백한 보복적 사항이다
- 참가자 48 우체부가 찾아와서 등기 받으라할 때 스트레스 받고, 법원 집행관이 밤에도 와서 등기 수령하라할 때 스트레스 받음
- 참가자 49 우체부가 등기전달을 위해 수시로 찾아오며 집이 비어 있을 때 현관에 법원 등기를 받으라고 스티커를 붙여놓고 갔을 때...아이들이 뭐냐고 물었을 때 힘들었습니다
- 참가자 50 심리상태 불안, 의욕 상실
- 참가자 51 미래에 대한 불확신으로 모든 생활이 불안하고 가족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항상 듭니다
- 참가자 52 오랜 투쟁기간으로 대부분 조합원이 피로감을 느끼는 것은 이해하고 있지만 손해배상당한 인원들은 그 동안 선두에 서서 파업을 벌였다는 이유로 탄압받고 있습니다. 대다수 그렇지 않은 조합원들이 손해배상, 징계 등으로 고통받는 조합원들을 이해하기 보단 본인들은 그런 일들을 당하지 않아 다행이라는 인식을 갖는 것들, 앞으로의 파업에도 참여하는 것들이 자기 손해라는 인식을 하는 것들이 마

음이 아프네요

- 참가자 53 앞으로의 일어날 일에 대한 불투명, 재판의 가, 부에 따라 변할 수밖에 없는 처지, 항상 불안한 마음이 마음 깊숙이 자리하고 있지만 남들에게는 숨기고 당당해야 한다는 것. 아이들의 미래가 나로 인해서 잘못될까봐 걱정이다
- 참가자 54 가족관계
- 참가자 55 가족관계, 생활비 부족
- 참가자 56 금전적인 수익이 줄어든 것이 가장 힘들었고 (가정생활) 급여의 줄어듦에 따라 일할 의욕 상실이 힘들었다. 특히 특근 근무나 연, 월차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회사생활)
- 참가자 57 마음적으로 상처를 마니 받아서 잠시 사람들을 좀 피했던 적이 있고 경제적으로 힘들다
- 참가자 58 경제적으로 부딪힐 때 힘들고 기존 조합원들(손해배상 비대상자) 대화 등 일상이 힘들
- 참가자 59 가정과 심리적인 압박감이 매우 컸다
- 참가자 60 자녀 교육비 및 생활비
- 참가자 61 금전적으로 제일 많이 그렇고 스트레스는 물론 모든 생활에 의욕이 없고 하루 빨리 끝났으면 하는 바람 뿐입니다
- 참가자 62 함께 싸웠던 동료들 간의 불신, 배신 등을 경험하게 되는데, 겪지 않아도 되었을 감정들을 경험하게 되는 게 가장 힘들었다
- 참가자 63 억울함, 회사에 대한 믿음이 깨짐
- 참가자 64 경제적인 문제가 제일 큼. 주변지인들과의 만남이 부담스러웠다. 유노동 무임금으로 회사 생활하는 게 답답하고 속상했다
- 참가자 65 자녀에게 사교육비를 줄인 것, 가족 친지 경조사 때 비용을 줄인 것
- 참가자 66 손해배상 이후 가족들 생활 자체가 많이 위축 또는 사람들 만나는 것 자체도 힘들었고 심리적으로도 많이 (금전적, 인간적으로) 힘들었다. 그리고 병원비 학자금 생활비 등 말로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음.
- 참가자 67 갚을 수 없는 금액에 대한 막연함.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는 빚. 경제적 이유로 치료받을 수 없는 고통. 가족들에게 지원 받을 수밖에 없는 금전적 상황.
- 참가자 68 대출상환. 가족들에게 말할 수가 없어서 돈이 필요한 일이 생기면 피하게 되고 거짓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가면 큰 병이면 돈이 많이 들까 걱정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60여명 동료와 가압류되는데 사람들이 회사 사표 쓰고 나가면, 남은 사람끼리 갚아야하는데 갚지 못할까 걱정되었습니다. 60여명의 사람들이 조합을 탈퇴하고 퇴사를 해서 조합 인원이 계속 줄어들었고, 조합을 운영할 수 없을까 걱정하고. 실제 노조 활동하는 조합원이 줄었습니다. 노조활동하니 "니 모양이 그렇지" 실패한 인생처럼 말하는 주변시선에 모욕감을 늘 느끼며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조합원이 줄어서 노조가 약해져 회사에서 찢리고 차별받을까 걱정도 됩니다.

- 참가자 69 1. 자녀들에게 교육 및 문화생활 등의 사안을 줄일 수밖에 없었다. 2. 부모님 생활비등을 드리지 못하였고 3. 보험료 등을 줄이고 4. 가정경제를 크게 줄였다. 5. 각종 모임들을 예전처럼 참여하지 못했다.
- 참가자 70 학자금, 생활비
- 참가자 71 1. 경제적으로 힘든 점(지출은 일정한데 수입이 줄어들어 지출을 줄이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 2. 집에서 회사 그만두라고 했을 때.
- 참가자 72 가족과 친지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아 최대한 즐겁게 지내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부모로서 자식들의 뒷바라지를 마음껏 하지 못하여 많이 괴로웠습니다. 지금 현재 대출 및 손해배상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배우자 및 가족들과 금전문제로 불편함이 없도록 빨리 손해배상가압류가 끝났으면 합니다. 아울러 개인적인 손해배상이 없도록 법적인 조치가 있도록 힘써주시시오. 감사합니다.
- 참가자 73 1. 자녀 학원 줄일 때 2. 생활비 부족해서 돈이 없을 때
- 참가자 74 명절에 부모님께 용돈 맘 편히 드리지 못하는 것. 금전적인 문제가 제일 힘든 듯.
- 참가자 75 손해배상을 맞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예전부터 들었지만 현실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생활하다가 2016년 10월에 손해배상을 당하고 나서 월급 가압류로 인해 하루하루 생활이 힘들어지고 가족들에게 1년 동안은 미안해서 말하지도 못하고 지금도 가족전체에게 오픈한 상태는 아니며 어머니만 아셔서 부채금액을 월급으로 갚고 있었던 걸 어머니가 힘들게 벌어서 모은 적금을 깨게 만든 상황입니다. 가족 중에서 고정적으로 수입이 있는 사람이여서 생활비를 예전만큼 내고 있기는 한데 가압류로 월 100만원도 안되는 월급이라 은행권 대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손해배상가압류가 끝나거나 해결되어서 이 고통에서 자유로워졌으면 좋겠다.
- 참가자 76 가족 병원과 교육 등 여행을 다니지 못해 아쉽다.
- 참가자 77 가까운 동료가 회사를 그만 두고 나가는 것과 압류에 대한 불안, 두려움, 부모님의 만류 등 내 자신이 얼마나 버틸수 (견딜 수)있는가 하는(노동조합 조합원) 불안.
- 참가자 78 이 나라에서 버려진 것 같은 생각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소소한 행복을, 권리를 누릴 수 없는 것이 인간으로서 누릴 행복은 잡으려 해도 잡히지 않는, 절망감과 정의가 없다는 상실감이 가장 크다. 점점 사회에서 동떨어지는 소외감과 경제적 어려움은 말할 것도 없다.
- 참가자 79 자녀 학원 및 물질적으로 해주지 못하는 부분. 생활비 부족으로 은행으로부터 미납 문자 볼 때
- 참가자 80 생활비, 자녀교육비
- 참가자 81 가족들과 친족들의 경제적인 이유로 질타 및 원망. 그리고 가족들에게 경제적인 부족함으로 인해 지원을 못해줄 때
- 참가자 82 생활비가 부족하여 아이들에게 너무 미안하며 한 번씩 나 자신에게 화가 날때...

- 사교육과 집을 포기했을 때. 회사에서 차별과 성과표 했을 때.
- 참가자 83 생각보다 적은 돈으로 산다는 게 참 힘들었습니다. 현재 의료비와 생활비가 계속 들어가는데 정해진 금액이 빠져나가고 나면 정작 쓸 수 있는 돈으로 한 달을 산다는게 힘들었습니다.
- 참가자 84 집안일만 했던 와이프가 직장에 다니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할때. 아들이 다니고 싶은 학원을 마음대로 못 보내줄 때
- 참가자 85 경제적인 면이 가장 우선적으로 힘들다. 그리고 다 갚지 못할 시 미래에 대한 불안. 나로 인해 가족들이 눈치 아닌 눈치 보는 부분. 주변사람들이 파업 손해배상 자란 이유로 안 좋은 시선으로 볼 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무차별적인 부정적 언행
- 참가자 86 믿고, 도와 주었던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 줄어든 수입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 참가자 87 없음<회사에서 압류가 있어서 다른 방법으로 임금을 보전하기에 힘들어 덜하다.
- 참가자 88 가장 힘든 점은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었다. 애들은 커가는데 생활도 그렇고 공부 시키는 것이 힘들다.
- 참가자 89 손해배상 청구 취지가 회사에서 나를 제거하기 위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느끼기에 이 회사 내에서 생활이 전혀 보람과 재미를 느낄 수 없고 사람들 간의 유대 또한 만들 수 없으며 미래의 회사에 나의 모습을 상상이 되지 않는다. 직장생활의 영위목적은 찾을 수 없다.
- 참가자 90 1. 자녀 교육 지원 미흡. 2. 가족 간에 여가 활동 중단. 3. 금융권 대출이자 증가. 4. 동료 및 지인들과의 만남. 5. 가족 친지 방문 줄어듦
- 참가자 91 가족들의 걱정이 부담스러워 한다. 생활비 걱정.
- 참가자 92 경제적으로 힘들고, 대인 관계가 많이 망가졌다. 자존감이 낮아졌다. 사람들(조합원 포함)과의 관계가 나빠졌다.
- 참가자 93 금전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힘들었다.
- 참가자 94 경제적으로 매우 힘이 듭니다. 가족, 친구들에게 말도 못하고 숨기고 생활하는 것이 매우 힘이 듭니다.
- 참가자 95 가족들에게 미안하지요.
- 참가자 96 주위의 동지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이 가장 마음 아팠다.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집을 팔아서 경제력을 메꾸었다. 생활환경이 바뀌었다.
- 참가자 97 남들보다 현금 사용이 힘들었다. 가족과 만나서 많은 용돈을 줄 수 없어서. 술 한잔 하다보면 내가 내기가 많이 힘들었다.
- 참가자 98 1.경제적으로 수입이 줄어들어서 힘이 들었다. 2.가족들에게 눈치보고 소비를 줄이자고 미안했다.
- 참가자 99 경제적인 문제 힘들었음. 가족들에게 미안했음
- 참가자 100 가압류 압박감. 압류 후 경제적 부담. 와이프와 자녀에게 넉넉하지 못한 미안감. 노후문제 걱정
- 참가자 101 생활비 문제(보험료, 차비, 휴대폰 값, 관리비 등등...). 저금을 하지 못하는 것.

생활에 여유가 없다. 돈에 쪼들리는 생활. 손해배상가압류 당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부담이 될까봐 술자리를 덜 가게 된다.

- 참가자 102 일상생활에 조금의 변화가 발생됨.
- 참가자 103 조합간부이고 지회장으로서 책임으로 조합원들이 느끼는 힘듦이 느껴지고 안타까워 두 배 아니 세배로 힘들었다. 사회적 인식에서 외부 사람을 잘 만나지 않고, 가족도 현재 이런 상황에 있는 것조차 모르고 있어 하소연 할 때도 없고 숨겨야 하는 힘듦이 있다. 회사로부터 사회로부터 손해배상가압류에 현실에 맞서야 하기 에 어떻게 조합을 유지할 수 있을까?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문제가 이중고를 겪고 있기에 돌파할 수 있는 제도도 없기에 막연한 현실에 가장 힘들었다..
- 참가자 104 경제적 문제, 가정 불안(금액)
- 참가자 105 손해배상가압류로 가정경제가 무너질까? 두려웠음!
- 참가자 106 정당한 파업 중 사측과 일어난 몸싸움으로 발생한 부분에 대해 조합원 개개인에게 거대한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는 자체에서 애사심이 뚝떨어지고 배신과 실망감이 들었다.
- 참가자 107 가족의 걱정
- 참가자 108 업무시간에 경찰/검찰에 조사 받으러 갔었던 것
- 참가자 109 소송만 제기된 상태에서 누구에게 알리지도 않고 주위 동료들을 잘 알지도 못한 다.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손해배상가압류가 현실화 된다면 상황은 모두 바뀌지라 예상된다. 지금 소송만 제기된 상황에서 억지로 손해배상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유연한 생각을 갖지만 만약 손해배상이 현실화된다면 가족관계 지인관계 경제적 심적인 모든 부분이 심각하게 다가올 것이다. 그 이후 상황은 엄청난 변화가 올 것으로 생각되어 미리 생각하기도 싫다.
- 참가자 110 재판등 기간이 길고 심리적으로 불편했다
- 참가자 111 심적 부담감(초기). 가족과의 불화
- 참가자 112 없음
- 참가자 113 경제적으로 힘들었다.
- 참가자 114 회사 내에서 회사가 신이다. 노사 신뢰로 작성한 합의서, 단체협약 등 이러한 회사의 부당함에 행동하면 뭐든지 손해배상을 걸었다. 지금도 진행하려는 금액이 5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안다. 부끄럽지 않은 남편, 아빠의 모습을 하려 하나, 회사의 부당함에 맞선 이유로 아내, 자녀들이 위축되고,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일 때, 너무 힘들다.
- 참가자 115 재판이 진행 중이라 특별히 없습니다.
- 참가자 116 회사의 불법으로 인해 노동자들이 정당한 요구를 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다가 노동자가 단결권을 행사하자 이에 대한 압력 수단으로 손해배상가압류를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 심적 부담감, 손해배상 확정 후 받아야 할 고통.
- 참가자 117 동료들의 신규채용으로 인하여 혼자 남게 되어 외롭고 만나게 되는 것을 꺼리게 된 점. 손해배상가압류가 언제 집행될지의 두려움. 노동자에게 불리한 재판은 회



사의 입맛에 따른 시기에 판결하고 노동자가 유리한 재판은 질질 끌다가 7~8년 이상 걸리는 불합리한 것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저뿐만이 아니라 모두들 제일 힘든 점이 늘어나는 재판기간이라고 합니다

- 참가자 118 손해배상 청구 자체의 부당함으로의 억울함. 보이지 않는 족쇄처럼 느껴져 생기는 끊임없는 불안함 손해배상 청구의 판결이 유무죄로 완결치 않았음에도 금전적으로 압박이 가해 오는 은행, 국가기관 등에 관한 끊임없는 불만
- 참가자 119 가정의 경제적 문제가 가장 힘들었고 그 이후 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되어야 하는지 이유도 모르겠습니다. 분명 회사를 살리자는 노동조합 취지였고 폭력경찰과 사측의 노동조합 협박으로 이루어진 분명한 계획된 일인데 왜 노동자가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가자 120 끝난 줄 알았던 손해배상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다는 것에 울화가 치민다
- 참가자 121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많았지만 새로운 직장을 구할 때도 주위의 따가운 시선이 싫었고 직장 구하기도 쉽지 않았다.
- 참가자 122 가정에 행복을 짓밟는 행위이고 사람들에게 평등권을 침해하며 사회적으로 관심에 대상이 된다.
- 참가자 123 경찰 손해배상은 있을 수 없다. 손해배상은 가정을 파괴될 수 있다는 사실이 현실
- 참가자 124 금전문제로 인한 가정불화
- 참가자 125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았고 각종 보험을 해약하고 가족 간의 갈등이 심했던 게 가장 힘들었음.
- 참가자 126 우리 노동자들이 더 피해를 입었는데 우리가 피의자가 되서 손해배상청구까지 받게 되서 억울합니다.
- 참가자 127 부당하게 해고되어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경찰 손해배상가압류 재판으로 아직도 2009년 해고 당시의 공포가 떠오르고 불안감이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파업했다는 이유만으로 개개인의 행위가 입증되지 못했음에도 공동정범이라는 이상한 법률로 인해 폭도, 빨갱이, 불법 인간이 되었습니다. 쌍용차 손해배상가압류를 철회해야 할 이유는 부당하게 가압류된 퇴직금을 피해 당사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넘어서 이명박정부에 의해 저질러진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국가폭력을 단죄해야 하는 역사적 책무이기 때문입니다. 다시는 국가가 주도해서 이당의 국민인 노동자를 국가공권력을 이용해서 때려잡고 구속시키고 범죄자로 만드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2009년 이후 쌍용차에서 구조조정 당한 노동자들과 가족들이 30명이나 유명을 달리하였습니다. 죽지 않아도 될 목숨이었습니다. 손해배상가압류는 사법부가 내리는 죽음의 선고입니다. 더이상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손해배상가압류를 중단해야 합니다.
- 참가자 128 살아간다는 생각.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 이런 것들이 힘들었다.
- 참가자 129 파업당시 말도 안되는 것들로 손해배상청구에 수백억원에 달하는 걸로 정신적으

로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었다. 회사나 쫓겨나는 상황에 퇴직금 가압류에 당장 먹고 살기에 힘들었고 막상 취직도 안되는 상황이었고...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은 두번 죽이는 행위입니다.

- 참가자 130 가정파탄, 생활고
- 참가자 131 경찰의 손해배상 가압류로 인해 2009년 이후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움을 겪었으며 개인 파산에 이를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손해배상가압류는 노동조합활동에 엄청난 위축을 주었으며 정부가 나서서 노동조합을 파괴하는 악법으로 이제는 폐지되어야 할 법입니다.
- 참가자 132 경제적 어려움.
- 참가자 133 가정생활 및 일상생활이 힘들었다.
- 참가자 134 경제적인 문제.
- 참가자 135 내가 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억울하고 경제적인 압박이 너무 커서 힘들었다.
- 참가자 136 한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으로 배우자에게 고통을 주고 많은 심적 부담까지 느끼게 했던 점. 경제적 부담감. 형제들과의 관계에서도 경제적 도움을 부탁하고 부담을 주었던 점. 파업사태이후, 사람이 무섭다고 느끼며 가졌던 생각과 마음가짐으로 죽고 싶을 만큼의 비참함 등등. 사회를 보는 시각들의 부정적으로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었던 것들이 힘들었던 것 같다. 지금도 100%는 아니지만 이 사회와 사람들을 불신하고 부정하는 것이 힘들다.
- 참가자 137 급여압류가 진행될까 두렵다.
- 참가자 138 과거를 떠올리고 싶지 않다. 힘들다. 금전적 어려움보다 '내조국 대한민국'구가로 부터의 손해배상 청구는 부모로부터의 내쳐짐 같은 막막함을 느꼈다.
- 참가자 139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었고 실제 압류가 진행될 시 통장 하나 만들 수 없는 상황에 암울했다. 특히 파업에 대해 국가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현실이 참혹했고 분노가 컸다. 정당한 파업조치 생존권을 지키자는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으로 족쇄를 채우려는 것은 없어져야 한다.
- 참가자 140 손해배상 시 경제적 및 생활고에 많이 어려웠음.
- 참가자 141 경제적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아 사회생활이 힘들었다.
- 참가자 142 대법원 판결만 남은 시점에서 실질적으로 피부로 와 닿는 압류가 현실화되지는 않을까 항상 불안했다.
- 참가자 143 경제적 어려움도 컸지만, 사회정치적인 모욕을 느꼈다. 쌍용차 파업노동자들에게 이중삼중의 고통과 낙인을 찍어 사회생활의 기반을 무너뜨렸다. 특히 재취업과정과 전세 사는 입장에서 사업주와의 갈등, 집주인과의 갈등도 예기치 못한 곳에서 손해배상가압류 문제가 삶의 발목을 잡았다. 복직 이후 월급에서 반을 잘라 가압류했던 것도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파업하면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지 은연중에 보여준 사례라 생각한다. 이런 작고 사소하게 보이는 문제가 가장 견디기 힘들었다.

- 참가자 144 정신적인 피해와 경제적 피해가 심했고 다른 일을 하는 동안 부당한 처우를 당한 적이 있음.
- 참가자 145 업무방해 등 노동3권을 제약하는 악법에 힘들었는데 국가권력이 노동자의 손발을 묶는 손해배상가압류까지 하다보니 노동자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파업권이 정당함에도 폭도로 매도당한 시간을 정부가 치유해야 한다. 하루 속히!
- 참가자 146 심리적인 요인, 경제적 낙후, 과도한 채무
- 참가자 147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 정신적. 미래 불확실성.
- 참가자 148 경제적 어려움과 가족들과의 불화
- 참가자 149 파업이 끝나고 구속되어 집행유예로 나오고 직장을 구하기가 힘들었고 생활비를 벌기가 쉽지 않았습니니다. 그런 상황에서 손해배상가압류까지 있어서 생활을 안정적으로 하기 어려웠다.
- 참가자 150 직장생활을 하든, 개인 사업을 하든 간에 신경 쓰여서 자유롭지 못한 거 같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 참가자 151 경제적 어려움, 불안감.
- 참가자 152 일만 일하면서 고민하고 생활하는데 지장이 있어 가족과 친구들 모두 걱정한다. 아이들 키우기가 정말 힘들고 사회생활 하기가 힘들다
- 참가자 153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어 돈을 해결 할 방법이 없어 이곳저곳 알아본 것
- 참가자 154 무엇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된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 경제적 사회적 불이익을 봐야하는 것
- 참가자 155 주변에 대한 시선과 생계적인 어려움. 집을 팔고 이사를 가는 형태, 가족간에 모이는 시간, 소통문제 등 여러 어려움을 느꼈다.
- 참가자 156 직장을 구하기 힘들어 경제의 어려움이 많고 가족관계도 안 좋음. 국가가 개인의 어려움을 보태는 그런 마음이 들어 괴롭다.
- 참가자 157 사업을 하려할 때 집을 팔 수가 없어서 천만원을 대출하여 공탁을 걸고 집 판매 후 사업자금이 부족함에도 대출 받은 천만원부터 값고 나머지 금액으로 사업자금을 하다보니 힘들었다.
- 참가자 158 가정생활에 대한 불편함
- 참가자 159 가정이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는 것과 보통의 세상에서 떨어져 혼자 되었다는 감정이 힘들었다.
- 참가자 160 해고되고 퇴직금 압류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웠음에도 퇴직금이 압류되어 도움이 되지 못했다. 파업을 이유로 손해배상과 압류는 해고노동자를 두번죽이는 일이다
- 참가자 161 해고 당시 아들은 대학교 1학년 딸아이는 고3이었기에 가장 돈 많이 들어갈 때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또한 퇴직금도 정상적으로 직장 생활 할 때보다 적게 책정되어 반 토막이 되어버린 게 억울하고 분해서 약 3년 동안은 우리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을 죽이고 싶도록 미웠다.
- 참가자 162 경제적으로 안 좋아 여러 가지(연금, 보험 등) 해지하고 사회생활이 위축되었던

- 것이 힘들었습니다.
- 참가자 163 사회적 소외감과 스트레스와 경제적 압박과 미래에 대한 불안, 정신적 고통이 컸으며 억울한 맘 표현할 길이 없었고 이 나라에 대한 실망감이 너무 컸다. 앞으로 근로자가 마음 편히 일만 할 수 있는 나라가 되길 바란다!
- 참가자 164 경찰 손해배상청구소송 이후 - 경제적 어려움이 크다. - 가족관계 불화 자주 있음. - 친구, 지인 등 별로 만나지 않음. - 술, 담배 등으로 스트레스 해소 - 수면장애 심함 등 - 건강상태 좋지 않음.
- 참가자 165 정신적으로 헤어날 수 없는 천문학적인 손해배상금액 때문에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에 고통스러웠으며 죽을 때까지 갚을 수도 없다는 심정들이 일상에서 계속 생각이 들어서 생활하면서도 고통의 연속이었다.
- 참가자 166 가족관계
- 참가자 167 아들 학원비에 대한 부담과 함께 내 자신인 가족을 부양해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담감이 크다고 생각했다
- 참가자 168 심리적 고통 및 스트레스
- 참가자 169 경제적 압박과 가정생활의 불화. 그로인해 이혼과 사회성 결여
- 참가자 170 정신적 피해가 가장 컸다. 파업으로 인하여 구속이 되어 형을 받고 나왔음에도 또 다시 손해배상가압류로 이중처벌을 하여 억울한 마음이 크다
- 참가자 171 경제적 어려움도 있었지만 손해배상이 청구된 이유에 대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참가자 172 국가가 원망스럽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화가 난다
- 참가자 173 경제적 파탄 트라우마가 발생. 깊은 감정적인 2009년 파업당시 경찰폭력 머리속에 떠올라 울컥한다.
- 참가자 174 재산상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음. 부부싸움도 많고 가정적으로 힘들었음
- 참가자 175 생활이 많이 힘들. 대인기피. 성격이 달라짐. 우울증
- 참가자 176 경제의 어려움. 억울함(죄가 없어서)
- 참가자 177 가압류로 인해 재산권 동결로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고 대출 또한 되지 않아 처음 장사 시작할 때 힘들었다
- 참가자 178 힘들다 힘들다 하니 죽으라 한다.
- 참가자 179 청구금액에 대한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가족들에게 미안했다
- 참가자 180 가족들의 생활고가 힘들었다. 필요시 친척들에게 손 벌려 보고 싶고 나쁜 생각만 할 때도 있었음.
- 참가자 181 손해배상과 해고로 생활이 어려워짐. 소송이 긴 기간 동안 진행되면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고 노조, 동료들에게 짐을 지우는 것 같아 힘들었다
- 참가자 182 "경제활동의 위축. 은행거래 등을 본인명의로 하지 못함. 박탈감 등 느껴짐. 배우자 통장 및 체크카드를 쓰게 되니 경제생활동이 고스란히 부인에게 노출됨. 미래에 대한 불안. 임대아파트 보증금을 언제 빼앗길지 모르는 두려움. 적금 등 새롭게 뭔가 시도하기 어려움. "

- 참가자 183 모든 금융권들에 압류가 진행되고 금융 등 경제활동이 전면적으로 제약받았다. 경제측면에서 상당한 어려움과 소외감을 느끼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
- 참가자 184 회사가 발악을 하는구나
- 참가자 185 가족에게 혼날까봐 조금 걱정했다
- 참가자 186 아
- 참가자 187 함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한 동지들에 대한 미안함
- 참가자 188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하여 회사가 손해배상가압류 한 것에 대하여 울분을 토한다
- 참가자 189 노동조합 활동을 접어야 하는 것. 투쟁을 접고 노동조합 깃발을 내려야 했던 것. 가족 생계.
- 참가자 190 손해배상 청구소송이후에 조합원들이 힘들어 했고 이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물어보는 등 많은 것을 물어보고 손해배상이 각 개인 또는 노동조합 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을 생각해보니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에게서 빼앗아가는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조합 활동을 함에 있어서 손해배상은 법으로 금지할 수 있도록 많은 법리적 검토 부탁드립니다.
- 참가자 191 분노스러웠고 국가기관이 국민을 상대로 한 소송이여서 더 그랬다. 할 테면 해봐라하는 자포자기 심정이었다.
- 참가자 192 2003년에는 저임금 노동, 2003년 이후 열사투쟁으로 근로조건 개선, 노조활동 중단 등 사회활동에 많은 지장을 받았고 30년 가까이 해왔던 노조활동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힘들고 부부다툼도 종종 있었던 점이 힘들었습니다.
- 참가자 193 파업으로 인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진행 중이나 노동조합 활동을 인정하지 않는 배우자에게 아직 청구소송 중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해시켜야 할지 고민입니다.
- 참가자 194 가정적으로 사회에 도태될 것 같은 불안한 인식이 들었습니다.

-----

추가답변

- 참가자 1 지난 1년간 파업을 끝으로 현장으로 복귀한 우리는 서서히 옛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노동조합과 회사 사이에 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다. 표면상으론 노동조합과 회사가 함께 공존하기 위한 단협을 맺은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사측은 노조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 중 손해배상은 단연 노동자의 삶을 위협하고 조합활동의 최대 걸림돌이라고 생각한다. 여전히 회사는 파업을 통한 조합원의 노고는 생각하지 않고 회사의 경영상황만을 논하며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며 아침 점심마다 진행되는 손배가압류 피켓팅을 비롯해서 손해배상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 말로만 공존을 외치며 아직도 손해배상을 통해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어쩌면 아직도 노조파괴 야욕을 갖고 있지 않은가 생각된다. 회사가 진정으로 노동조합을 인정한다면 화해의 의미로 손해배상을 철회하길 바란다.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시작한 정당한

쟁의활동이 손해배상으로 인해 발목을 잡혀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노동자를 위한 법을 개정하여, 노동인권이 인정되는 나라에서 노동자가 제 목소리를 잃지 않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국민으로 살아가는 날이 오길 바란다.

참가자 2. 회사는 충분히 철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철회하지 않는 것은 파업을 마무리하고 복귀했음에도 노동조합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든 조합원을 와해시키기 위한 잡스러운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조합은 흔들리지 않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조합원들이 흔들리지 않게 중심을 잘 잡아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가자 3. 손해배상.....처음 노동조합 활동을 할 때 손해배상이란 것을 크게 체감하지 못했다. 하지만 활동을 하면 할 수록 이것이 얼마나 족쇄가 되어 가는지 알 수 있었다. 가압류, 가처분, 손배 3종 세트로 인해 노동자로서 우리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의견을 강력하게 주장하기도 어렵고, 자본은 교섭에 성실히 임하기보다 상대가 지치고 실수하기를 바라며 3종 세트 뒤에 숨어 약해지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파업이 마무리되고 회사와 협의가 마무리되어 복귀하여 일상 생활로 돌아온 이 시점에 또 다시 노동자들은 3종 세트로 인해 일상 생활이 뒤틀린다. 노동조합 또한 족쇄나 마찬가지로 손배로 인해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현실로 향하게 되는 것 같다. 정부가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유린하는 손해배상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바란다. 노동자가 노동자로서 바로 설 수 있는 법 제도 또한 개정과 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참가자 4. 손배가압류는 두 번 다시 쟁의활동을 못하게 한다. 결국 노동조합의 힘을 잃게 한다.

참가자 5. 언제부터인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변호사들의 먹거리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회사는 이익을 손해본다며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노동조합은 열심히 일한 댓가를 회사가 싹쓸어가는 것을 조금이라도 노동자에게 돌아가게 하려고 서로 싸웁니다. 이때 사용하라고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을 두고 있지만 60년대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의 노동시장과는 괴리가 너무 크게 느껴집니다. 사용자나 노동조합이나 양측다 노조법을 고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조법을 지키면 손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사용자는 최대한 법을 이용하여 노동조합을 괴롭히는 수단을 발견했는데 이것이 손해배상가압류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자가 평생 벌어도 못 갚을 돈을 손배로 걸어놓고 노동자에게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를 선택하게 만드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자본의 건전한 투자가 있을 수 있고, 나라의 건강한 발전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용자는 파업은 사회적 손실이

며 노동조합이 그 원인이라고 합니다. 노동조합만 없으면 사회적인 손실이 없고 세상이 아름답게 살만한 곳이 되는 것처럼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이는 아직 경제 선진국에 걸맞지 않는 사용자의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가 쉽게 고용되고 쉽게 해고되는 세상 속에서 정착이라는 안정감이 없는 미래라는 것은 더 이상 희망 없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어떤 희망을 품고 남은 삶을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000만 노동자에게 내일의 태양은 더욱 빛나고 따스할 것이라는 희망을 만들어 주시길 기도합니다.